

보도시점

배포시

배포 2024. 9. 5.(목) 금융위 의결 후

이자 받는 선불수단연계 통장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

- 금융위는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6건 의결 -

금융위원회는 9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.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61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.

혁신금융서비스 **의결 결과**는 **다음과 같다.** (의결 결과 세부내용 ☞[참고])

<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>

구 분	업체명	서비스명	
신규 지정 (6건)	당근페이, 하나은행	당근머니 하나 통장 서비스	
	네이버파이낸셜, 우리은행	네이버페이 머니 통장 서비스	
	CJ올리브네트웍스, 우리은행	CJ페이 우리 통장 서비스	
	삼성카드, KB국민은행	모니모-KB 간편금융 통장 서비스	
	네이버파이낸셜, 신한은행	네이버페이 마이비즈 통장 서비스	
	왓섭	구독경제 이용자 대상 예적금 비교·추천 서비스	

금융위원회는 당근페이 등 4개 선불사업자와 3개 은행이 함께 제공하는 '선불전자지급수단-은행통장 간 연계 서비스*'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, 금융소비자가 선불지급수단을 사용할 때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제휴은행통장에 보관하고, 은행으로부터 보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으면서 결제시에는 제휴 통장으로부터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.

- * ① 당근페이 이용자의 '당근머니' 충전금액을 하나은행 계좌에 보관
 - ②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'네이버페이 머니' 충전금액을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
 - ③ **CJ페이** 이용자의 'CJ페이 충전포인트' 충전금액을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
 - ④ 모니모 이용자의 '모니머니' 충전금액을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

또한, 네이버파이낸셜 및 신한은행의 '네이버페이 마이비즈' 통장 서비스'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, 네이버페이 사업자 전용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 정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한은행 계좌를 플랫폼 내 에서 간편하게 개설하고,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 및 이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* 네이버 스마트스토어, 스마트플레이스에 입점한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사업 정보 (매출, 정산, 사업 관련 지출)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

마지막으로 ㈜왓섭에 대해 예금성 금융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 등록 등에 대한 특례 등을 부여하여, '구독경제 이용자 대상 예적금 상품 비교·추천 서비스'를 현재 운영중인 구독통합관리 플랫폼('왓섭')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	책임자	과 장	신상훈 (02-2100-2530)
		담당자	서기관	김보균 (02-2100-2841)
			사무관	이석애 (02-2100-2859)
<공동>	금융위원회 은행과	책임자	과 장	이진수 (02-2100-2990)
		담당자	사무관	박준상 (02-2100-2994)
<공동>	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수호 (02-2100-2630)
		담당자	사무관	홍연제 (02-2100-2631)
<공동>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	책임자	과 장	신장수 (02-2100-2990)
		담당자	사무관	허 성 (02-2100-2862)
<공동>	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	책임자	과 장	신상록 (02-2100-2620)
		담당자	사무관	김예빈 (02-2100-2622)
<공동>	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	책임자	국 장	곽범준 (02-3145-7160)
		담당자	팀 장	심은섭 (02-3145-7162)
<공동>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	책임자	국 장	정우현 (02-3145-8020)
		담당자	팀 장	김지웅 (02-3145-8022)
		담당자	팀 장	김은성 (02-3145-8030)
<공동>	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	책임자	국 장	이길성 (02-3145-5700)
		담당자	팀 장	이승훈 (02-3145-5685)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김은순 (02-3145-7550)
	여신금융감독국	담당자	팀 장	이성복 (02-3145-7440)







참고

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 세부내용

〈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(6건) 〉

1~4 선불수단연계 통장 서비스

구분	^① 당근머니 하나 통장 서비스	^② 네이버페이 머니 통장 서비스	③CJ페이 우리 통장 서비스	^④ 모니모-KB 간편금융 통장 서비스	
업체명	당근페이, 하나은행	네이버파이낸셜, 우리은행	CJ올리브네트웍스, 우리은행	삼성카드, 국민은행	
	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, 제12조제1항, 제22조제1항				
		❷금융산사 보호에		❸ 신용정보업감독	
특례내 용		관한 감독규정		규정 제13조의3	
		제22조제1호		제 5 항 제 3 호 ,	
				여신전문금융업법	
				제46조	
서비스 출시 일정(예정)		'25년 상반기		'24년 4분기	

[서비스 주요내용]

각 선불사업자의 선불충전금을 각 제휴은행 계좌에 보관*하고, 선불충전금(당근머니, 네이버페이 머니, CJ페이 충전포인트, 모니머니)을 통해 결제할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루어지는 연계 서비스

* 각 은행은 소비자에게 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

[기대 효과]

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은행에 직접 예치함으로써 안전성이 높아지고, 금융이익(이자 등)을 이용자에 귀속시키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

[주요 부가조건]

사업자는 ¹ 금융소비자보호법 인가정책상 예금성 상품 중개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,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,

^❷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는 정보주체가 동의한 제공 목적 외 마케팅 목적 등으로 임의로 이용되지 않도록 활용범위 제한, 정보보호 방안 마련 등을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.

② 네이버페이 마이비즈 통장 서비스 (네이버파이낸셜-신한은행)

[서비스 주요내용]

네이버파이낸셜이 네이버페이 사업자 전용 플랫폼('마이비즈 서비스*')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회원을 대상으로 신한은행 제휴 계좌('마이비즈 통장') 개설을 중개**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.

- * 스마트스토어, 스마트플레이스, 광고, 네이버페이 등 네이버의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업자 회원들이 사업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고, 사업 관련 정보 및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
- ** 네이버페이 마이비즈 화면에서 계좌 개설을 안내하고, 실제 개설 절차는 신한은행 페이지에서 진행(웹뷰방법)

[특례내용] ¹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, 제12조제1항, 제22조제1항 ¹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

제휴 계좌소개 및 안내는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하고, 제휴 계좌에 대한 이용자의 이체지시를 전달하는 행위는 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포함하여 위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

→ 네이버파이낸셜이 이용자에게 **신한은행 제휴계좌를 소개·안내**하고, **제휴계좌 조회·이체**가 가능하도록 **관련 규제**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[기대 효과]

본 서비스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회원은 하나의 사업자 전용 플랫폼에서 금융·비금융 서비스*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 (금융) 계좌개설, 계좌조회, 계좌이체, 금융혜택 확인 등 (비금융) 매출·정산정보 확인, 광고비 지출 확인, 가맹점 정보 확인 등

[주요 부가조건]

사업자는 ¹ 금융소비자보호법 인가정책상 **예금성 상품 중개업을 허용하고**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,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,

²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는 정보주체가 동의한 제공 목적 외 마케팅 목적 등으로 임의로 이용되지 않도록 활용범위 제한, 정보보호 방안 마련 등을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.

[향후 일정]

전산 개발 등을 거쳐 '25년 상반기 중 서비스 출시 예정입니다.

③ 구독경제 이용자 대상 예적금 비교·추천 서비스 (왓섭)

[서비스 주요내용]

왓섭 앱* 이용자가 기존 구독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, 소비자에게 저축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·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.

* 오픈뱅킹을 이용해 이용자의 구독서비스 및 정기결제 내역을 관리하는 앱

[특례내용] [●]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, 제12조제1항 [○]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

금융상품에 대한 판매대리·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하며,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(1사 전속의무).

→ **왓섭이 왓섭 앱** 이용자에게 예적금 상품을 비교·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[기대 효과]

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예금성 상품 정보를 추천 받아 비교하여 구독 서비스를 취소한 금액만큼 저축을 늘리고 예·적금 이자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하여,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[주요 부가조건]

사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인가정책상 예금성 상품 중개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, [●]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,

²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매비중 한도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[향후 일정]

전산 개발 등을 거쳐 '25년 상반기 중 서비스 출시 예정입니다.